

# 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28,175,987	6,845,280
일반회계	222,180,924	6,665,428
특별회계	5,995,063	179,852
기타특별회계	5,995,063	179,852
의료급여기금	189,087	5,673
주거환경개선사업	30,658	920
주차장	5,701,807	171,054
지하수관리	41,506	1,245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32,005	96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안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872,56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